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653

발의연월일: 2021. 4. 22.

발 의 자: 강훈식 · 기동민 · 김성환

김윤덕 · 송갑석 · 이광재

이규민 · 이동주 · 이성만

이소영 · 이용빈 · 이장섭

조오섭 의원(13인)

제안이유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에 대한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방식이 새로운 글로벌 경영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ESG 경영지표에 대한 평가와 인증은 기업 경쟁력의 새로운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ESG경영에 대한 평가지표와 인증기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고 사회적책임에 관한 지원규정만을 두고 있어, 특히 해외에 납품하는 수출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편입이 어려운 실정임.

주요내용

이에 기금의 운용·관리하는 경우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을 중소기업·벤처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 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경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 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함(안 제66조 등).

법률 제 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이 조에 따라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경우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제67조제1항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제24호 및 제25호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의2를 제23호의2로 하며, 같은 항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제22호 및 제2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중소기업·벤처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경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①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①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⑥ 이 조에 따라 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경우 환경, 사회, 지
	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u>있다.</u>
<u>⑥</u> (생 략)	<u>⑦</u> (현행 제6항과 같음)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①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	
여 사용할 수 있다.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u><신 설></u>	21. 중소기업·벤처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경영을 위하여 중소벤
	<u>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u>
	어 <u>ㅂ</u>
<u>21.·22.</u> (생 략)	<u>22.·23.</u> (현행 제21호 및 제22
	호와 같음)
<u>22의2.</u> (생 략)	<u>23</u> 의2. (현행 제22호의2와 같
	<u>음)</u>
<u>23.</u> · <u>24.</u> (생 략)	<u>24.•25. (현행 제23호 및 제24</u>
	호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